

OECD국가들의 실질은퇴연령

- 실질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여 더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나이
- 공식퇴직연령(official retirement age): 정년퇴직연령으로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연령을 의미(단, 국가에 따라 정년퇴직연령과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s by earnings):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수급연금액의 비율

- OECD 조사결과¹⁾ 한국의 실질은퇴연령은 남성 71.2세, 여성 67.9세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OECD국가 중 실제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73세/75세)²⁾, 한국(71.2세/67.9세) 일본(69.5세/66.5세) 순으로 조사됨.
 - 한국의 40세 이상 중고령자는 정년퇴직 후 남성은 약 11년, 여성은 약 8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남성이 퇴직 후 가장 장기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국 여성 역시 멕시코 여성(10년) 다음으로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됨.
- OECD국가의 평균 실질은퇴연령은 남성 63.5세, 여성 62.3세로 OECD국가 대부분에서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현상이 나타남(표 1 참조).
 - 오스트리아(-6.1)³⁾, 룩셈부르크(-5.8), 벨기에(-5.4), 핀란드(-4.8), 이탈리아(-4.2)를 비롯한 19개국(63%)에서 남성이 정년 이전에 은퇴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슬로바키아(-7.5), 룩셈부르크(-4.7), 독일(-4.0), 핀란드(-4.0), 노르웨이(-3.8)에서 여성의 조기은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들 국가를 포함한 21개국(70%)의 여성들은 공식적인 퇴직연령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와 대조적으로 멕시코(8.0/10.0), 한국(11.2/7.9), 일본(6.5/5.5), 터키(3.5/6.3), 그리스(4.4/2.9) 등은 공식퇴직연령이 넘어서도 노동시장에 남아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늦은 은퇴(late retirement)’ 현상이 나타남.
 - ※ 헝가리, 벨기에,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1) OECD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OECD 회원국(30개국) 4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제 평균 은퇴연령이 얼마인지를 조사함(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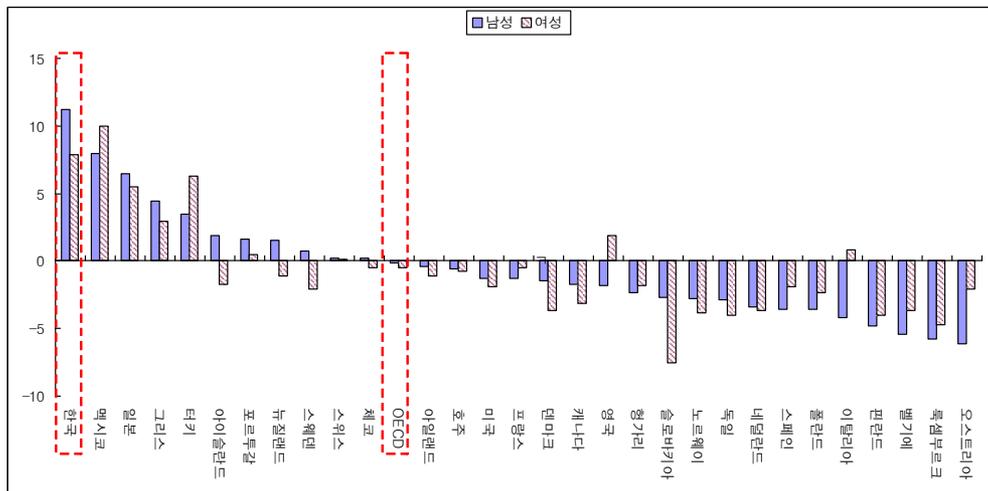
2) 괄호 안 실질은퇴연령은 (남성/여성)이며 이하 동일한 형식으로 표기.

3) 오스트리아 남성은 공식퇴직연령보다 6.1년 더 일찍 은퇴함을 의미. 이하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

정년이 되기 이전인 50대 후반에 조기은퇴가 이루어지지만, 한국과 멕시코는 실질은퇴연령이 70세를 초과함.

- 국가별 실질은퇴연령은 국가별 소득대체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OECD 자료에 따르면(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 Retirement-Income System In OECD Countries), 평균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이 큰 나라는 아이슬란드(90.2%), 네덜란드(88.3%), 룩셈부르크(88.1%) 등이며, OECD 평균(59.0%) 미만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42.1%), 일본(33.9%), 멕시코(36.1%) 등으로 나타남.
 - 소득대체율의 큰 격차를 보이는 이들 두 그룹 국가들은 실질은퇴연령에서도 큰 차이를 보임. 소득대체율이 높은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실질은퇴연령이 평균 63.2세, 소득대체율이 낮은 한국, 일본, 멕시코는 평균 71.2세를 기록함.
 - 늦은 은퇴가 이루어지는 한국, 일본, 멕시코의 경우,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예외적으로 그리스와 터키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95.7%, 86.9%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은퇴는 공식은퇴연령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실질은퇴연령과 공식퇴직연령의 갭(gap)



주 : '실질은퇴연령과 공식퇴직연령의 갭(gap)'은 (실질은퇴연령-공식퇴직연령)으로 플러스(+)는 공식퇴직연령 이후 늦게 은퇴함을, 마이너스(-)는 공식퇴직연령 이전에 조기은퇴함을 의미함.
 자료 : 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 Social Indicators.

〈표 1〉 4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은퇴연령(2002~07)

	남 성			여 성		
	실질은퇴연령	공식퇴직연령	실질은퇴연령 -공식퇴직연령	실질은퇴연령	공식퇴직연령	실질은퇴연령 -공식퇴직연령
멕시코	73.0	65	8.0	75.0	65	10.0
한국	71.2	60	11.2	67.9	60	7.9
일본	69.5	63	6.5	66.5	61	5.5
포르투갈	66.6	65	1.6	65.5	65	0.5
아이슬란드	68.9	67	1.9	65.3	67	-1.7
아일랜드	65.6	66	-0.4	64.9	66	-1.1
터키	63.5	60	3.5	64.3	58	6.3
스위스	65.2	65	0.2	64.1	64	0.1
미국	64.6	65.8	-1.3	63.9	65.8	-1.9
뉴질랜드	66.5	65	1.5	63.9	65	-1.1
노르웨이	64.2	67	-2.8	63.2	67	-3.8
스페인	61.4	65	-3.6	63.1	65	-1.9
스웨덴	65.7	65	0.7	62.9	65	-2.1
OECD	63.5	63.6	-0.1	62.3	62.7	-0.5
호주	64.4	65	-0.6	62.2	63	-0.8
영국	63.2	65	-1.8	61.9	60	1.9
캐나다	63.3	65	-1.7	61.9	65	-3.1
네덜란드	61.6	65	-3.4	61.3	65	-3.7
덴마크	63.5	65	-1.5	61.3	65	-3.7
핀란드	60.2	65	-4.8	61.0	65	-4.0
독일	62.1	65	-2.9	61.0	65	-4.0
그리스	62.4	58	4.4	60.9	58	2.9
이탈리아	60.8	65	-4.2	60.8	60	0.8
룩셈부르크	59.2	65	-5.8	60.3	65	-4.7
프랑스	58.7	60	-1.3	59.5	60	-0.5
체코	62.2	62	0.2	58.5	59	-0.5
벨기에	59.6	65	-5.4	58.3	62	-3.7
헝가리	59.7	62	-2.3	58.2	60	-1.8
오스트리아	58.9	65	-6.1	57.9	60	-2.1
폴란드	61.4	65	-3.6	57.7	60	-2.3
슬로바키아	59.3	62	-2.7	54.5	62	-7.5

주 : 2002~07년 40세 이상 중고령층 대상 OECD국가들의 실질은퇴연령(5년간 평균) 및 공식퇴직연령.
 자료 : 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 Social Indicators.

(박명지 동향분석실 위촉연구원)